

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 [목 적]

1. 교육과정, 공동체, 시설 환경의 측면에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반영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한다.
2.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변혁을 내용으로 하는 시민교육을 추진한다.
3.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.

제2조 [명 칭] 이 단체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라고하며, 아름다운학교라고 약칭한다.

제3조 [구 성]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운동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,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.

제4조 [사 업]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.

1. 아름다운학교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연수
2. 각종 대안적 학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3. 탄소중립, SDGs, ESG 등 사회변혁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4.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

제5조 [소 재] 아름다운학교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, 향후 필요에 따라 시·도 지역에 지역본부를 개소한다.

제2장 회 원

제6조 [자격 및 종류]

- ① 아름다운학교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회원이 된다.
- ② 회원 구분은 준회원, 일반회원, 정회원, 특별회원, 후원회원, 학교회원, 기업회원으로 한다.

제7조 [권 리] 아름다운학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
1. 아름다운학교의 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과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2.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 그리고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8조 [의 무] 아름다운학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.

1.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정관, 내규를 지킬 의무
2.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
3.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, 매월회비로 낼 경우에는 회비 첫 납부일로부터 정회원이 되며, 연회비일 경우 가입일(또는 회계연도 내)에 회비를 납부하면,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정회원이 된다.

제9조 [자격상실]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아름다운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제10조 [회원탈퇴]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,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 받을 수 없다.

제3장 임 원

제11조 [임원의 종류와 정수]

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공동대표 - 7인 이내 이하(중앙 본부)
2. 감사 2명 이내
3. 운영위원장(상임대표)
4. 운영위원 - 30인 이내(각 지역본부대표, 지역협의회 대표, 총회 선출직으로 운영위원회 내의 상임위원 4인~12인, 근로자대표, 수혜자대표, 각 연구소, 센터, 위원회, 사업단 1인)
5. 지역협의회 회장
6. 지역본부 대표
7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임원으로 영입하는 사람

제12조 [임원의 임기]

- ① 임원 중 공동대표와 운영위원, 감사,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 [임원의 선임 방법]

- ① 임원은 총회준비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괄 선출한다.
- ② 총회준비위원회는 총회개시 2개월 전에 출범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.
- ③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공동대표의 위임을 받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 [공동대표 및 임원의 직무]

- ① 공동대표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를 대표하여 활동하며, 본 운동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.
- ② 운영위원장(상임대표)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, 본 단체의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.

제15조 [대표 직무대행자의 지명]

- ①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대표직을 대행한다.
- ②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위임받아 선출된 임원이 대표직을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정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 직무 대행자를 임명한다.

제16조 [감사의 직무]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이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
2.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의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 단체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 또는 총회,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
제4장 총 회

제17조 [지위]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사업계획서 승인
5. 기타 중요사항

제18조 [총회의 소집]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,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소집을 요구할 때 수시 소집하고, 공동대표가 그 의장이 된다.
- ② 공동대표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정기총회 전에 2회에 걸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과된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 할 수 있다.

제19조 [총회의 의결 정족수]

-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20조 [총회 소집의 특례]

-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2.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3.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21조 [총회 의결 제척 사유]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5장 운영위원회

제22조 [운영위원회의 기능]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중요사항

제23조 [정족수]

-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를 못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-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4조 [운영위원회 소집]

- 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상임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상임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.

제25조 [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]

-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재적상임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와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2.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상임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운영위원장이 한다.

제26조 [서면결의 금지] 운영위원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6장 총재 및 고문, 대표자운영위원연석회의, 후원회 등

제27조 [총재 및 고문] 아름다운학교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,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약간 명을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만장일치로 고문으로 추대하고 고문 중 한 명이 총재의 역할을 맡는다.

제28조 [대표자운영위원연석회의]

① (지위) 대표자운영위원연석회의는 총회를 긴급하게 열 시간이 없어 대표단이 그 소집을 요구하거나, 운영위원회가 위기관리 및 갈등관리 차원에서 소집을 요구할 경우 개최되며 임시총회에 준하는 기능을 갖는다.

② (구성) 대표자회의는 고문, 대표단, 지역본부 대표, 아름다운학교 중앙/지역협의회 대표, 운영위원장, 사무총장, 특별위원회 위원장, 각 사업단장으로 구성한다.

③ (소집) 대표자회의 소집은 분기1회 하며, 회의는 상임대표가 주재한다.

제29조 [후원회]

① (구성) 본 단체 후원회는 국가인재양성과 학생, 교원, 학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학교를 만들고자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② (선출) 본 단체 대표자 및 운영위원회의 추대로 후원회장을 선출한다.

③ (임기) 후원회장의 임기는 추대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, 재추대로 연임할 수 있다.

제30조 [연수원, 연구소, 센터, 정책위원회, 특별위원회]

① (지위) 연수원과 연구소, 정책위원회는 아름다운학교 운영위원회의 직속으로, 센터와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산하로 두고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재정·인적으로 독립하여 운영을 할 수 있다.

② (구성) 연수원, 연구소, 정책위원회, 센터, 특별위원회에는 각 기구의 장, 실무책임자, 연구원, 자문위원,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 사업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(재정) 각 산하기구의 중앙본부 지원 분담금은 프로젝트 예산의 5~20%(연구 10~20%, 사업 5~10%)를 적용하고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되,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회계 관리는 사무처와 협의해야 한다.

제31조 [지역본부, 지역협의회 설치]

① (지위) 지역본부, 지역협의회는 사업, 재정·인적 구성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유지한다.

② (설립) 지역본부, 지역협의회는 20인 이상 회원이 존재하며, 사업 방향 및 조직이 만들어지면 아름다운학교의 설립취지와 정관에 맞는지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 승인에 의해 누구라도 설립할 수 있다.

③ (회원) 지역본부, 지역협의회는 중앙본부 회원으로 구성하며, 중앙본부의 총회나 주요 회의에는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다.

④ (분담금) 지역본부, 지역협의회는 일정한 분담금을 내야하며, 그 방법은 지부 규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.

제32조 [사무처]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, 실장, 팀장, 간사를 둔다.

제33조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필요에 의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제7장 재 정

제34조 [회계연도]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35조 [예산 및 결산] 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해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하며,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 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6조 [수입]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, 후원금, 특별모금, 기타수익으로 한다.

제37조 [정당활동 제한] 공동대표, 운영위원장, 지역본부 대표, 연구소장, 센터장, 각 위원회 위원장, 사무총장이 정당의 주요임원(당직자)이 될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.

제38조 [준용규정]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. 내규는 운영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.

제39조

1. [모금액 활용실적 공개]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.school1004.net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 까지 공개한다.

2. [운영규정]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제8장 해산 및 청산

제40조 [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] 해산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.

부 칙

1. 이 정관은 2001년 2월 24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2. 이 정관은 2003년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3. 이 정관은 2004년 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4. 이 정관은 2004년 5월 15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5. 이 정관은 2005년 3월 5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6. 이 정관은 2006년 3월 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7. 이 정관은 2007년 4월 1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8. 이 정관은 2008년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9. 이 정관은 2009년 7월 25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
10. 이 정관은 2010년 7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11. 이 정관은 2011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12. 이 정관은 2012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13. 이 정관은 2013년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14. 이 정관은 2014년 3월 2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15. 이 정관은 2018년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16.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17.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18. 이 정관은 2022년 4월 2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19. 이 정관은 2022년 7월 22일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20. 이 정관은 2023년 5월 31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21. 이 정관은 2024년 6월 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22. 이 정관은 2025년 3월 1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23. 이 정관은 2025년 3월 3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통과되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 <끝>